

ISO/TC 23 농임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박 완 용 교수

목 차

I. 국제표준화 동향

1. 기술위원회 개요
2. 분과위원회 개요
3. 차기국제회의 일정

부록.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ISO/TC 23 농임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I. 국제표준화 동향

1. 기술위원회 개요

1) 명 칭

농·임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2) 작업범위

동물과 관련하여 모든 기준이 되는 전자/전기적 측면과 전자신분인식장치를 포함하여 사용되는 원예, 조경, 관개 및 기타 관련 분야의 장비뿐만 아니라, 농·임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트랙터, 기계류, 장치, 초지작업 및 관련 장비에 대한 표준화

3) 설립연도 : 1947년

4) 간 사 국 : 프랑스(AFNOR)

5) 국제규격 작업현황

(1) 발간규격 : 38종

(2) 등록작업프로젝트 : 1종

단 계	AWI	NWIP	WD	CD	DIS	FDIS	계
진행규격	-	-	-	1	-	-	1

6) 국내 간사기관 : 농업기계화연구소 시험평가과

2. 분과위원회 개요

1) ISO/TC23/SC2(일반시험)

- 명 칭 : 일반시험(Common tests)
- 작업범위 : 농·임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의 커플링 시험, 전자호환성(EMS)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
- 간 사 국 : 미국(ANSI)
- 아국지위 : P 회원(1999년 11월 가입)
- 회 원 국 : 32개국(P회원 : 17 / O회원 : 15)
- 국제규격 작업현황
 - (1) 발간규격 : 29종
 - (2) 등록작업프로젝트 : 2종

단 계	AWI	NWIP	WD	CD	DIS	FDIS	계
진행규격	-	-	-	1	-	1	2

2) ISO/TC23/SC3(운전자의 안전성 및 쾌적성)

- 명 칭 : 운전자의 안전성 및 쾌적성(Safety and comfort of the operator)
- 작업범위 : 제어기 운전 에 필요한 동력, 좁은 트랙바퀴의 트랙터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
- 간 사 국 : 독일(DIN)
- 아국지위 : P 회원(1999년 7월 가입)
- 회 원 국 : 33개국(P회원 : 19 / O회원 : 14)
- 국제규격 작업현황
 - (1) 발간규격 : 18종
 - (2) 등록작업프로젝트 : 3종

단 계	AWI	NWIP	WD	CD	DIS	FDIS	계
진행규격	-	-	-	-	3	-	3

3) ISO/TC23/SC4(트랙터)

- 명 칭 : 트랙터(Tractors)
- 작업범위 : 유압, 전력 전달, 후크형 기계적 연결장치 및 견인 링, 트랙터 및 견인 차량의 제동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
- 간 사 국 : 독일(DIN)

- 아국지위 : P 회원(1999년 7월 가입)
- 회원국 : 33개국(P회원 : 17 / O회원 : 16)
- 소속 작업반

WG	의 장 국	명 칭
4	ANSI(미국)	유압적용
5	DIN(독일)	전력변속기
6	BSI(영국)	후-타입 연결
8	DIN(독일)	동력인출장치 드로바
9	DIN(독일)	전면수행로더/프레임 커플링 접착
10	DIN(독일)	쾌속 트랙터

- 국제규격 작업현황
 - (1) 발간규격 : 32종
 - (2) 등록작업프로젝트 : 14종

단 계	AWI	NWIP	WD	CD	DIS	FDIS	계
진행규격	1	-	-	6	7	-	14

4) ISO/TC23/SC6(수확물 보호 장치) Equipment for crop protection)

- 명 칭 : 수확물 보호장치(Equipment for crop protection)
- 작업범위 : 농업용 공기식 분무기에 대한 시험방법, 분무기의 노즐막대기에 대한 시험방법, 용어, 드리프트 측정 등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
- 간 사 국 : 프랑스(AFNOR)
- 아국지위 : O 회원(2001년 10월 가입)
- 회원국 : 32개국(P회원 : 15 / O회원 : 17)
- 소속 작업반

WG	의 장 국	명 칭
3	AFNOR(프랑스)	분무기 노즐바 서스펜션의 시험방법
4	BSI(영국)	드리프트 측정
5	BSI(영국)	배낭식 분무기
6	DIN(독일)	분무기 청소
7	DIN(독일)	드리프트 분류절차
8	AENOR(스페인)	공기보조분사의 현장시험방법
9	DIN(독일)	분무기 노즐의 컬러코딩
10	공석	필드 크롭 분무기의 시범트랙

- 국제규격 작업현황

- (1) 발간규격 : 20종
- (2) 등록작업프로젝트 : 11종

단 계	AWI	NWIP	WD	CD	DIS	FDIS	계
진행규격	1	-	-	5	5	-	11

5) ISO/TC23/SC7(수확 및 저장설비)

- 명 칭 : 수확 및 저장설비(Equipment for harvesting and conservation)
- 작업범위 : 낱알건조기에 대한 시험방법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
- 간 사 국 : 이태리(UNI)
- 아국지위 : O 회원(2001년 10월 가입)
- 회 원 국 : 28개국(P회원 : 12 / O회원 : 16)
- 소속 작업반

WG	의 장 국	명 칭
1	DIN(독일)	잔디깎이 회전날
2	ANSI(미국)	회전 및 도리깨식 잔디깎이-물체투입시험 및 보호선반
3	DIN(독일)	콤바인, 목초 및 목화수확기(ISO4254-7의 개정)

- 국제규격 작업현황

- (1) 발간규격 : 15종
- (2) 등록작업프로젝트 : 11종

단 계	AWI	NWIP	WD	CD	DIS	FDIS	계
진행규격	-	-	-	-	2	1	3

6) ISO/TC23/SC13(잔디용 정원용 동력기구)

- 명 칭 : 잔디 및 정원용 동력장비(Powered lawn and garden equipment)
- 작업범위 : 잔디 및 정원용 트랙터의 치수요건, 제설기, 울타리 절단기, 잔디깎기, 날이 달린 예저, 진동, 분쇄기, 로타리식 경운기, 기호 등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
- 간 사 국 : 미국(ANSI)
- 아국지위 : O 회원(2002년 7월 변경)

- 회원 국 : 26개국(P회원 : 10 / O회원 : 16)

- 소속 작업반

WG	의 장 국	명 칭
2	ANSI(미국)	폭뢰발사장치
4	BSI(영국)	헤지 트리머
5	BSI(영국)	잔디 트리머
13	ANSI(미국)	잔디깎는 기계

- 국제규격 작업현황

(1) 발간규격 : 15종

(2) 등록작업프로젝트 : 4종

단 계	AWI	NWIP	WD	CD	DIS	FDIS	계
진행규격	1	-	-	1	2	-	4

7) ISO/TC23/SC14(조작제어, 조작기호 및 조작 매뉴얼)

- 명 칭 : 조작제어, 조작기호 및 조작매뉴얼(Operator controls, operator symbols and other displays, operator manuals)

- 작업범위 : 조작제어, 조작기호 및 조작 매뉴얼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

- 간 사 국 : 미국(ANSI)

- 아국지위 : O 회원(1999년 11월 가입)

- 회원 국 : 28개국(P회원 : 13 / O회원 : 15)

- 소속 작업반 : 현재 활동 작업반이 없음

- 국제규격 작업현황

(1) 발간규격 : 12종

(2) 등록작업프로젝트 : 4종

단 계	AWI	NWIP	WD	CD	DIS	FDIS	계
진행규격	-	-	-	1	-	-	1

8) ISO/TC23/SC15(임업용 기계류)

- 명 칭 : 임업용 기계류(Machinery for forestry)

- 작업범위 : 임업용 기계류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

- 간 사 국 : 핀란드(SFS)

- 아국지위 : O 회원(1999년 10월 가입)

- 회 원 국 : 27개국(P회원 : 14 / O회원 : 13)
- 소속 작업반

WG	의 장 국	명 칭
1	SFS(핀란드)	보호구조물 : ROPS 및 OPS

- 국제규격 작업현황
 - (1) 발간규격 : 15종
 - (2) 등록작업프로젝트 : 1종

단 계	AWI	NWIP	WD	CD	DIS	FDIS	계
진행규격	1	-	-	-	-	-	1

9) ISO/TC23/SC17(휴대용 임업 기계류)

- 명 칭 : 휴대용 임업 기계류(Manually portable forest machinery)
- 작업범위 : 휴대용 임업기계류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
- 간 사 국 : 스웨덴(SIS)
- 아국지위 : O 회원(1999년 10월 가입)
- 회 원 국 : 26개국(P회원 : 16 / O회원 : 10)
- 소속 작업반

WG	의 장 국	명 칭
1	SIS(스웨덴)	용어 및 기호
2	SIS(스웨덴)	소음
3	SIS(스웨덴)	진동
4	SIS(스웨덴)	체인 톱 안전성

- 국제규격 작업현황
 - (1) 발간규격 : 31종
 - (2) 등록작업프로젝트 : 7종

단 계	AWI	NWIP	WD	CD	DIS	FDIS	계
진행규격	-	-	-	3	3	1	7

10) ISO/TC23/SC18(관개·배수기구와 시스템)

- 명 칭 : 관개·배수기구 및 시스템(Irrigation and drainage equipment and systems)
- 작업범위 : 압축식 관개장비의 정의, 관개장비의 기술 데이터표, 관개용 스프링쿨러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

- 간 사 국 : 이스라엘(SII)
- 아국지위 : O 회원(1999년 11월 가입)
- 회 원 국 : 32개국(P회원 : 13 / O회원 : 19)
- 소속 작업반

WG	의 장 국	명 칭
1	SCC(캐나다)	가압관개장비 - 정의
3	ANSI(미국)	관개 스프링클러
4	SCC(캐나다)	관개용 연구시험장비
5	AFNOR(프랑스)	마이크로관개 방출기
6	AFNOR(프랑스)	조화화

- 국제규격 작업현황
 - (1) 발간규격 : 26종
 - (2) 등록작업프로젝트 : 10종

단 계	AWI	NWIP	WD	CD	DIS	FDIS	계
진행규격	-	-	3	2	4	1	10

11) ISO/TC23/SC19(농업용 전자제품)

- 명 칭 : 농업용 전자제품(Agricultural electronics)
- 작업범위 : 이식 및 고정식 전자장비, 식별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
- 간 사 국 : 독일(DIN)
- 위원장 및 간사
- 아국지위 : O 회원(2000년 3월 가입)
- 회 원 국 : 32개국(P회원 : 27 / O회원 : 5)
- 소속 작업반

WG	의 장 국	명 칭
1	SCC(캐나다)	이동장비
2	AFNOR(프랑스)	고정장비
3	NEN(네덜란드)	식별

- 국제규격 작업현황
 - (1) 발간규격 : 26종
 - (2) 등록작업프로젝트 : 10종

단 계	AWI	NWIP	WD	CD	DIS	FDIS	ISO규격	계
진행규격	4	-	-	1	-	1	2	10

3. 차기국제회의 일정

회의개최월	회의개최일	회의장소	해당위원회	지 위
7월	17일	독 일 프랑크푸르트	TC23/SC7	O회원
	18일		TC23/SC14	O회원
9월	9~13일	Le Tholonet (프랑스)	TC23/SC18	O회원
	17~19일	베를린(독일)	TC23/SC3	P회원
	22~24일	런던(영국)	TC23/SC13	O회원
2/4분기	2004년		TC23/SC17	O회원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1) 목 적(제1조)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들고 있다.

① 피해자의 보호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주체는 소비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주로 당해 제조물을 자기를 위해 사용·소비하는 자를 염두에 둔 것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자 외에도 예컨대 결함차의 사고에 연루된 승객이나 보행자 등과 같이 제조물을 직접 사용·소비하지 않은 제 3자에게도 당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본법에 있어서 피해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을 포함한 취지이다. 이를 위해 본법의 목적을 소비자이익의 옹호 또는 증진에 한정하지 않고 넓게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②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본 법의 직접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생활의 안전향상」은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달성될 것이 기대되고 있는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조물책임의 도입으로 초래되는 재판에 있어서 쟁점의 명확화, 판례수준의 평준화, 기업과 소비자 쌍방의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재판 외에 있어서 피해구제의 원활화, 더 나아가 국제적인 조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2) 제조물(제2조 제1호)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제조」라 함은 제조물의 설계, 가공, 검사, 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원재료에 손을 더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이며 이른바 제 2차 산업에 관계가 있는 생산행위를 가리키며 1차 생산품의 산출, 서비스의 제공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공」이라 함은 동산을 재료로 하여 이것에 공작을 더하여 그 본질은 유지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첫째,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자연력이 해당한다. 유체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간의 일부를 점하는 유형적 존재(분자가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다.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전기, 음향, 광선, 열, 물의 운동은 무체물이지만 관리가 가능하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자체와 서비스(용역)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동산이어야 한다. 이 법률에서는 부동산은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민법 제99조)¹⁾. 또한 제조물인가 여부는 유통된 시점에서 책임주체마다 판단한다. 사고 시에 부동산의 일부로 되었던 동산이더라도 인도된 시점에서 동산이고 당해 결함과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동산의 제조업자 등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셋째,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어야 한다. 제1차 산업이나 제3차 산업에 있어서 생산행위에는 「제조 또는 가공」 특히 「가공」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간단하게는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가공」인가 「미가공」인가의 판단은 구체적으로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당해 제조물에 덧붙여진 행위를 평가하는 등으로 결정된다.

1)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3) 결함(제2조 제2호)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다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의 하자(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²⁾)에는 포함되지만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간단한 품질의 하자는 본법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법에서는 결함의 정의에서 이것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상기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결함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결함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2)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제조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과정에 이물질이 혼입된 식품이나 자동차에 부속품이 빠져있는 경우에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하게 된다.

② 설계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었지만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예컨대 녹죽기에 어린이들의 손가락이 잘려 나간 경우처럼 설계자체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다.

③ 표시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다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이 제조물 자체의 결함이라고 한다면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물 자체에 존재하는 결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나 지시 또는 제조물에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표시상의 결함이 된다. 이를 지시·경고상의 결함이라고도 한다.

(4) 제조업자(제2조 제3호)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의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조물책임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현상에 수반되는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신뢰책임, 위험책임, 보상책임 등이 전체로서 과실책임으로부터 결함책임으로의 전환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연혁을 감안하면 제조물책임을 묻게 될 책임주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제3조)

제 3 조 (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조는 제조자 등이 지는 제조물책임의 책임근거규정이며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책임규정의 특칙으로서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① 결함과 손해사이의 관계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추궁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당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점 즉 결함과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입증책임

본 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요건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의 재판실무에서는 제조물에 의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제조물의 종류, 결함의 태양, 제조 후 사고발생까지의 기간, 제조물의 사용상황, 증거의 편재상황 등의 여러가지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개의 사안에 따라서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존재, 결함의 존재시기가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정에 있어서는 경험칙이

나 사실상의 추정 등이 사안에 따라서 활용되며 사안에 따른 공평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의 경감이 도모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법원 실무를 전제로 하면 추정규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제가 충분히 도모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추정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보호가 곤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판례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관련 규정(민법 제393조3)을 유추 적용한다는 견해를 채용하고 있으며 실무상에서도 이 견해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법 제393조 규정의 기본견해는 개개의 사안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인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특별손해인가를 검토해서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며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시에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6) 제조업자의 면책사유(제4조)

제 4 조 (면책사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3)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본 조는 제3조에 기해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제조업자가 일정한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제3조에 규정하는 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이며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면책사유는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둘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셋째,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넷째,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이다.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판매를 위해 생산되었으나 아직 유통되지 않은 결함제조물에 의해 기업의 고용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품으로서 이미 유통되어 사용된 결함부품 또는 결함원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고용인은 결함부품 또는 결함원료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② 개발위험의 항변(기술수준의 항변)

개발위험이라 함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수준에 의해서 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③ 구속적인 법령기준 준수의 항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라 함은 국가가 제조자에 대하여 법률이나 규칙 등으로 일정한(최고기준인) 제조방법을 강제하고 있고 제조자로서는 제조하는 이상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한 국가가 정한 기준 자체가 정당한 안전에의 기대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인해 필연적으로 결함있는 제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을 의미한다.

④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항변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은 제조물책임을 당해 제조물의 결함 존재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인 이상 부품·원재료이더라도 결함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당해 부품·원재료를 사용하여 다른 제조물을 생산하는 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당해 부품 원재료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부품, 원재료의 제조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⑤ 사후개선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의 면책사유 부인

이상과 같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가 있더라도 제조업자 또는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공급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개발위험의 항변, 구속적 법령기준준수의 항변 및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물을 공급한 자는 사후에 제조물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만약에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리콜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거나 설계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연대책임(제5조)

제 5 조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함이 있는 제품의 제조에 관여한 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관여자 모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다. 이러한 연대책임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각각의 책임주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원인과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8) 면책특약의 제한(제6조)

제 6 조 (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에 의한 자기의 제조물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된다. 이것은 주로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한 면책특약을 제한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

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소멸시효 등(제7조)

제 7 조 (소멸시효 등) ①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본 조는 제조물책임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다. 민법 제766조4)의 장기의 기간제한에 대해서는 판례상 제척기간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며 본법에 있어서도 같은 견해에 있으며 기산점 및 제척기간의 장기에 대해서 제조물책임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즉 책임주체마다에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있다.

(10) 민법의 적용(제8조)

제 8 조 (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본 법은 과실책임주의에 기한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에 더하여 새롭게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제도인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민법의

4)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책임제도의 특칙이 되는 것이고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민법에 의한 보충적인 적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과실상계규정이 있다. 과실상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의 명문의 규정(민법 제763조5), 제396조6) 준용)이 있다. 과실상계는 가해자측에 전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사정이 피해자측에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이며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고려되는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책임에 있어서 책임요건으로서의 「과실」과는 같은 것은 아니고 넓게 「피해자측의 부주의」로 해석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방해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민법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11) 시행일과 적용례(부칙 제1항, 제2항)

- ①(시행일) 이 법은 2002年 7月 1日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부칙 제1항에서는 본법의 시행일을 제정일로부터 2년 6개월후인 2002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조물책임이라는 개념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점, 동법이 재판규범뿐만 아니라 행위규범으로서도 작용하는 것이며 사회 일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계자들이 새로운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5)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6)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② 적용례

일반적으로 민사법규에 있어서는 행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법의 적용을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본법 부칙 제2항에서도 제조물책임의 귀책근거는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한 다음 공급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제조업자 등이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